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2월 3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양준모 | www.cubs.or.kr

<대테러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오해와 진실 시리즈 ⑤>

같은 이름의 다른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여·야 개정안 비교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1. 들어가는 말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테러 혐의자, 용의자 및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법으로 대테러방지법 중 핵심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통비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으며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 국가기관의 합법적 감청을 보장한다. 그러나 최초 법제정 이후 급속히 발전하는 통신기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 환경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보급된 휴대폰은 5천400만대이고 3천700만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나 법원의 감청 허가를 받고도 통신사업자 협조설비가 없어 집행이 불가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2005년 8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휴대폰 불법감청 사건재발 방지 차원에서 모든 전기 통신의 감청은 통신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감청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직접 감청을 금지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 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19대 국회 들어 통비법 개정안이 28건 발의되어 3건이 가결되고 25건이 계류 중이다. 25건 중 여당인 새누리당 안이 8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등 야당 안이 15건, 무소속이 2건이다. 여당과 야당은 감청대상 범죄수, 수사목적 감청 대상, 범죄, 감청승인 요건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 통비법과 여야 개정안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통비법 개정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같은 이름의 다른 통신비밀보호법

1) 현행 통비법과 여당 개정안 비교

제19대 국회 들어 여당에서는 박민식·서상기 의원이 대표적으로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핵심은 합법적 통신제한조치가 집행되도록 전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에게 감청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미래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협조 설비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구비의무를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외국처럼 연 20억 원 이하 또는 통신업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및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의견수렴 및 감독을 위해 여야 국회 추천인, 업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통신제한조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서상기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국인 사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감청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감청대상 범죄 수는 현행 280여개로 유지하고 해킹을 감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감청 오남용 등 불법 감청방지를 위해 '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사업자 감청 협조의무 내용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업체가

감청 설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20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청협조설비를 통해 내국인을 감청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표 1】 참조).

반면 박민식 의원안은 서상기 의원 안에 비해 불법, 오·남용 처벌 및 방지조항이 대폭 보완되었다. 보완감청대상 범죄 수는 240여개로 축소했지만 불법 도·감청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구체적이다. 휴대폰 도청 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 시, 범죄 은닉 목적용 대포폰 제공 및 사용자 처벌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불법감청 지시자 처벌을 위한 내부 고발제를 도입하고 장치 및 개인사찰 목적용으로 감청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5년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였다. 감청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통신제한조치감시위원회’를 신설한다(【표 1】 참조). 즉, 박민식 의원안은 현행 통비법에서 불법 도·감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불법, 오·남용 방지책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 현행 통비법과 서상기·박민식 의원 개정안 비교

개정案 내용	현행 통비법	서상기 의원案 (①14.1.3발의 ②15.11.17 발의)	박민식 의원案 (15.6.1발의)	비 고
감청대상 범죄수 축소	280여개	①280여개	240여개 (34개 범죄 제외)	감청대상 범죄축소로 남용 방지
휴대폰 도청 S/W(해킹) 개발·유통·사용자 처벌		② 해킹을 감청으로 불인정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스마트폰에 도청앱(해킹)을 개발·설치한자를 처벌하여 개인사생활 보호
범죄 은닉 목적용 대포폰 제공 및 사용자 처벌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대포폰으로 범죄를 도모하고 감청 및 통화내역 조회 회피 차단
불법감청 지시자 처벌을 위한 내부 고발제 도입			10년이하 징역, 5년 자격정지	국가기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불법감청 지시할 경우 처벌하여 불법감청 억제
정치 및 개인사찰 목적용으로 감청한자 처벌			10년이하 징역, 5년 자격정지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 목적에만 감청 허용, 개인정보 수집 차단
통신업체 감청협조 설비만을 통해서만 전기통신 감청 허용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	국가기관 전기통신 감청장비 자체 보유 및 임의사용을 금지시켜 불법감청 원천 차단
통신업체의 감청대상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시 처벌			1억원이하 과태료	감청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감청 오남용 등 불법 감청방지를 위해 미래부 산하 위원회 설치운영		① 통신제한조치 기술자문위원회 신설 (감청 오남용 시스템 감독, 감청 기술표준 제정)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 신설 (감청 집행창구 운영, 감청 오남용 감시, 감청 기술표준 제정)	정보수사기관과 통신업체간 유착을 통한 불법감청 시도 차단, 감청 오남용 감시, 감청기술표준 제정 등 투명성 제고

개정案 내용	현행 통비법	서상기 의원案 (①14.1.3발의 ②15.11.17 발의)	박민식 의원案 (15.6.1발의)	비 고
통신사업자 감청 협조 의무 내용	시행령 명시 (미제정)	①法에 명시	法에 명시	시민단체 법에 명시 요구
통신업체가 감청 설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처벌	없음	①20억원이하 과 태료 부과	매출액 3%이하 과태료 부과	외국도 통신업체 감 청설비 미구축시 이 행 강제금 부과
감청협조설비를 통 해 내국인 감청한자 처벌		②10년이하 징역		외국인에 한해서만 휴대폰 및 SNS감청 을 허용, 내국인 인 권침해소지 원천차단

2) 현행 통비법과 야당 개정안 비교

19대 국회 야당에서 발의한 주요 통비법 개정안은 서영교, 송호창, 전해철 의원 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당 통비법이 통신 사업자의 감청설비구축과 오남용방지에 역점을 두었다면 야당 통비법은 전반적으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축소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수사목적 감청 대상 및 대상범죄를 현행법보다 축소시키고, 감청기간도 단축시키는 것이다. 안보목적이라도 감청 승인요건을 강화시키고, 긴급감청은 폐지한다는 것이다. 감청 사실 통지시점을 단축시키고 감청 집행 시 입회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즉, 야당안의 전반적인 기조는 수사 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최소한의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2012년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통비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수사목적 감청허가 조항에서 포함된 범죄를 계획한 자는 한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안보목적의 감청 승인 요건을 현행 내국인이 경우 고등법원,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에서 내·외국인 모두 고법으로 하는 것이다. 긴급 감청 조항을 삭제하고 감청사실 통지시점을 감청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감청 집행 시 법원이 선임자를 입회시키는 내용 등이다(【표 2】 참조).

2014년에 발의된 더민주당 송호창 의원 안의 주요내용은 수사목적 감청 허가 조항에서 범죄계획자는 제외하고 수사목적 감청 대상범죄도 피의자로 축소하는 것이다. 안보목적 감청 승인요건도 강화시키고, 감청 사실 통지시점을 감청 종료 후 30일 이내로 단축시키며 감청 집행 시 입회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서영교 의원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표 2】 참조).

2015년에 발의된 더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의 주요내용은 수사목적 감청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목적 감청 대상자도 축소하는 것이다. 감청기간은 수사 목적의 경우 1개월, 안보 목적으로는 2개월로 현행 통비법의 감청기간- 수사의 경우 2개월, 안보의 경우 4개월-보다 짧다. 안보목적 감청 승인권자를 현행 내국인은 고법, 외국인은 대통령에서 내국인은 고법, 외국인은 법원으로 변경했다. 현행법과 비교하여 감청사실 통지 시점도 단축시켰다(【표 2】 참조).

【표 2】 현행 통비법과 서영교, 송호창, 전해철 의원 개정안 비교

개정案 내용	현행 통비법	서영교 의원案 (12.11.2 발의)	송호창 의원案 (14.1.16 발의)	전해철 의원案 (15.6.12 발의)	비고
수사목적 감청	범죄 계획하는 경우	범죄 계획(예비 또는 음모)	범죄 계획(예비 또는 음모)	범죄 계획하는 경우 제외	범죄 사전예방 곤란

개정案 내용	현행 통비법	서영교 의원案 (12.11.2 발의)	송호창 의원案 (14.1.16 발의)	전해철 의원案 (15.6.12 발의)	비고
허가요건 강화	포함	한 자 처벌 경우 한정)	한 자 처벌경 우 한정)	(수사목적 감 청불가)	
수사목적 감청 대상 축소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피의자	피의자	피의자	간첩사건 등 내사가 필요한 현실 도외시
수사목적 감청 대상범죄 축소	국가보안법, 군 사기밀보호법 규정된 범죄	국가보안법(2 개), 군사기밀 보호법(7개) 조항 한정			안보위해사범 대상범죄 축소로 안보역량 저하
감청기간 단축	수사: 2개월 안보: 4개월	수사: 10일 안보: 10일		수사: 1개월 안보: 2개월	안보위해범죄는 장기은밀 진행 되므로 단기간 사로 범인 색 출 곤란
안보목적 감청 승인요건 강화	국가안전보장 에 상당한 위 협 예상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 당한 위협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 당한 위협	국가의 존립에 직접적이고 상 당한 위협	산업기술 유 출 등 국가안 보 위 협 요 소 대응 곤란
안보목적 감청 승인권자 변경	내국인: 고법 외국인: 대통령	내·외국인 : 고법		내국인: 고법 외국인: 법원	외국인 대상 효율·신속 집행 불가
긴급 감청 폐지		긴급 감청 조항 삭제			형소법상 긴급 체포 규정 같이 긴급 상황 대 비 필요
감청사실 통지시점 단축	법적처분(공소 제기 등) 종료 후 30일 이내	감청종료후 30 일 이내	감청종료후 30 일 이내	감청종료후 30 일 이내	수 사 종 결 前 통지로 범인 도피·증거인 멸 초래 소지
감청집행시 입회인 제도 신설	없음	감청집행시 법원 이 선임한 자 입회	감청집행시 통 신업체 직원 입회		현재 감청집행 시 통신 업체 직원이 사용자 일치여부 확인 하는 등 통제 장치 충분

야당 개정안에서 특징적인 것은 감청기간을 단축시킨 것이다. 안보위해 범죄는 장기적으로 또는 은밀히 진행되므로 단기간 범인을 색출하는 것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감청기간과 비교해 보아도 야당 안은 상대적으로 짧은 감청 기간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주요 선진국 수사·안보 목적별 감청기간 비교

구 분	수사목적	안보목적
한 국	서영교 의원안: 10일	서영교 의원안: 10일
	전해철 의원안: 1개월	전해철 의원안: 2개월

구 분	수사목적	안보목적
미 국	30일	내국인: 90일 외국인: 1년
영 국	3개월	3개월
독 일	3개월	3개월
프랑스	4개월	4개월
호주	90일	6개월

3. 맺는말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통비법을 현행법과 비교하면 여·야 개정안은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여당안은 기존의 통비법에 대한 부작용-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남용, 사생활 침해 등-을 보완한 것과 통신사의 감청설비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서상기 의원안은 감청 대상을 외국인에 한정함으로써 국내인에 대한 사찰 우려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박민식 의원안은 불법적 감청에 대한 방지책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야당안은 감청허가 요건은 강화한 반면 감청대상·감청범죄수·감청기간 등은 단축하고 감청 요건은 강화시키며 감청승인권자를 변경함으로써 감청범죄 수사의 신속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긴급 감청은 폐지시키고 감청사실 통지시점을 단축하고 감청집행 시 입회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야 개정안이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주요 선진국 통비법을 참조하여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세계 주요국의 통비법은 감청 대상 및 허가, 기간,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 감청당사자에 대한 통지, 불법감청에 대한 처벌조항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장비 설치 및 협조의 의무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감청으로 인한 개인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관계법령에 포함시키면 테러 및 중대 범죄를 위한 합법적인 감청은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 개정안과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효적인 통비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